

■ 치과 칼럼

치과 임플란트로의 접근

▶ 1221호에서 이어집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상실된 치아를 복원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었다는 기록들이 있지만, 현재 새로운 치과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티타늄을 이용한 임플란트 치료는 40여년 전 스웨덴에서 틀니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치악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형태의 틀니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기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식립된 임플란트에 고정된 틀니는 탈락이 쉽고 저작하는 힘을 많이 줄 수 없던 일반 틀니에 비해 훨씬 편하고 강한 저작력을 발휘해 사람들로 부터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부위에도 적용되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방법과 디자인의 임플란트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여러 시행착오와 끊임 없는 과학적 연구 끝에 최근 10년 동안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법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에 기능을 우선시 하던 치료 관점에서 이제는 자연치아와 같이 심미적인 만족과 기능적인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법이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자연치아의 기능과 모양을 재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시된 임상연구에 의하면 임플란트는 30년 동안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 치료법 중 가장 높은 성공률입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는 미래를 약속하는 치료법이고 이를 이용한 치료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많은 치과에서 일반 기본 치료법 중 하나로 선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임플란트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자연치아의 심미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플란트 식립 전에 우선 임플란트가 심길 부위 조직을 자연치아가 있던 상태와 비슷하게 재건해야만 가능합니다. 심한 충치나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발치되면 치아 주변 골조직과 연조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조직들은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던 조직들이어서 치아가

발거되면 그 기능을 잃고 존재의 이유를 갖지 못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혹은 전부 상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조직에 임플란트를 심어 자연치아 상태의 결과를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때 제일 먼저 눈여겨 보는 것이 뼈의 양과 밀도입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심겨질 수 있고 또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치아 발거 후 남은 뼈의 양이 필요한 크기의 임플란트를 위해 충분한지 알아야 합니다. 뼈의 양이 부족하면 골 이식술이 필요합니다. 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치료의 적응증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뼈의 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치아의 재건이 끝나고 나서도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불행히도 이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심겨진 임플란트는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좋은 치료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시술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한번 뼈에 밀착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할 수 있는 상태로 조직을 재건해야 하는 시술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방지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결과 예측을 고려한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상태를 토대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시술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치주임플란트수술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교육

베일 벗은 하버드대 입학 사정 시스템

지원자의 95% 이상이 탈락하는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의 입학사정 시스템이 베일을 벗었다. 지난 3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하버드대 입학사정 시스템은 이 대학과 아시아계 단체 연합체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SFFA)' 간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 바늘구멍의 비밀, 출신·동문·재산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9일 "하버드대가 인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입학전형 과정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소송에서 이 대학의 비밀스러운 선발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는 매년 미국 전역에서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교생 4만 명이 지원하며 합격자는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원자들은 합격률 5% 미만의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지만, 대학이 학생들을 어떻게 걸러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NYT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지원자를 출신지에 따라 미국 20개 지역의 목록으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과 고교에 친숙한 입학사정관이 배속된 하위 위원회에 각각 배당한다. 일반적으로 2, 3명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학업(academic), 비교과(extracurricular), 체육(athletic), 인성(personal), 종합(overall)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교사와 지도교사 추천서도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지원자가 어디 출신이며, 부모가 하버드대를 다녔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의 다양성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이 완벽한 수능(SAT) 성적만큼 중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버드대는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팁스(ti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인종과 민족, 동문의 자녀(레거시), 기부자 친척, 교수나 직원 자녀, 선발된 운동선수 등 5개 그룹을 우대한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SFFA 측 주장이다.

◆ 입학처장 리스트와 '뒷문 입학' 논란

학교 기부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

와 관련이 있는 지원자 명단도 '입학처장 리스트' 형태로 별도 관리된다. 동문이 입학 면접관으로 자원봉사하고 지원자인 자녀 이름을 '입학처장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문회 관계자, 기부금 모집 부서 자문을 거쳐 명단의 지원자가 학교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등급도 부여된다. 기부금 규모가 클수록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피츠시먼스 처장은 "명단의 지원자는 동문회, 장학금 및 대학 발전사업 관계자가족인 경우가 있고 하버드대 입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하버드대는 성적은 아슬아슬하지만 대학이 선발하길 원하는 지원자 명단인 'Z리스트'라는 명단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9학년도 신입생 중 연간 50~60명이 Z리스트를 통해 합격증을 거머쥐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백인이나 동문 자녀 등 입학처장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 아시아계 '차별' 의혹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줬느냐다. 1990년 교육부 보고서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팁'(입학 우대)을 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입학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SFFA는 "2000~2015년 하버드대 지원자 16만 명의 입학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가 아시아계 지원자의 성격, 호감도, 용기 등 인성 평가 점수를 낮게 매겨 차별을 했다."고 주장한다.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5가지 정보(이름, 가문, 민족, 운동선수, 재정 지원) 등이 적힌 서류를 이용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측은 "조직적 차별은 없었다"며 "2개 집단(아시아계 중 켈리포니아주 출신과 여성)의 특징을 부풀려 전체 아시아계를 차별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